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관명 (부서명)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석면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(안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5항)

1)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·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

2)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

나.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서식 등 수정(안 별지 제19호, 제20호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국립환경과학원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8조제4항 중 “매 분기”를 “분기”로 한다.

제46조제1항 후단 중 “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”를 “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중 “제28897호”를 “제00000호”로, 같은 서식 중 “제761호”를 “제000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5호의2서식 중 “제28897호”를 “제00000호”로, 같은 서식 중 “제761호”를 “제000호”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제28897호”를 “제00000호”로, 같은 서식 중 “제761호”를 “제000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) ① 대통령령 제0000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대통령령 제000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기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1부
2. 건축물석면지도(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) 1부
3.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·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
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·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

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.

③ 대통령령 제0000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
2.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(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) ① ~ ② (생 략)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·분석에 필요한 시료(試料)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<u>환경부장관</u> 이 정하여 고시한다.	제9조(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국립환경과학원장</u> ----- ----
④ · ⑤ (생 략) 제28조(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제28조(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<u>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제38조(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<u>매 분기</u> 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⑤ (생 략)	제38조(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분기</u> ----- -----.
제46조(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	제46조(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

현행	개정안
등 평가)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, 석면조사·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석면조사·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<u>사항의 검토</u>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 ② (생략)	등 평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사항은</u> <u>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				
제출인	상호(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주소		(전화번호:)					
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	건물명		위치					
	연면적(㎡)		작업기간					
	석면건축자재 [길이(m) · 면적(㎡) · 부피(㎥)]		(필요시 별지 첨부)					
측정 기관	대표자	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주소							
	측정자/분석자				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 의 종류	분석 계수 시야수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	비산측정 종료 사진		비고			
	(필요시 별지 첨부)		(필요시 별지 첨부)					
	측정 시작 시간:		측정 종료 시간:					
	(필요시 별지 첨부)		(필요시 별지 첨부)					
	측정 시작 시간:		측정 종료 시간:					
	(필요시 별지 첨부)		(필요시 별지 첨부)					
	측정 시작 시간:		측정 종료 시간:				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
		없 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석면해체작업감리인 []지정 []변경지정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	처리기간	7일	
발주자	회사명 소재지		대표자		
	(전화번호:)				
공사업체 (시공사)	회사명	대표자	법인(사업)번호		
	소재지		(전화번호:)		
	공사기간	공사금액		천원	
감리인	회사명	대표자	법인(사업)번호		
	소재지		(전화번호:)		
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기관	회사명	대표자	법인(사업)번호		
	소재지		(전화번호:)		
석면해체· 제거업체	회사명	대표자	등록번호		
	소재지		(전화번호:)		
석면 해체 · 제거 감리용역 현황	용역명 현장주소				
	(전화번호:)				
	용역 개요	1.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, 내화피복재량(m²) 2.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(m²)			
	기간 및 금액	석면해체·제거 감리기간	~	석면해체·제거 감리금액	천원
감리원 배치 현황	직 무	등 급	성 명	생년월일	감리원 현장 배치 기간(일수)
					~ ()
					~ ()
					~ ()
변경 내역	구 분		변경 전		변경 후
	변경내용				
	※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[] 군 입대 []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[] 부도·폐업으로 인한 퇴직 [] 이민 [] 사망 [] 발주자의 교체 요청 [] 퇴사 또는 휴직 [] 양도·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[]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				
감리인 확인	감리인	회사명:	대표자명: (서명 또는 인)		
		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:		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30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[]지정 []변경지정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건축물석면조사 []인정 []불인정 통보서

승인번호	제 호
건축물명	
성명(대표자)	
건축물 소재지	(전화번호:)
인정의 경우	대통령령 제0000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환경부령 제00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 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인정합니다. 년 월 일 유역·지방환경청장 직인
불인정의 경우	대통령령 제0000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환경부령 제00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 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 년 월 일 유역·지방환경청장 직인